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6-83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①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②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③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④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와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yhchoi828@korea.kr

○ 전화 : 043-830-4325,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4.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호, 2026.4.22., 일부개정]	개정안	개정 사유
제5절 내부비상대응계획		
제29조(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①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는 공정운전절차 중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비상 운전정지 권한 및 절차 등을 작성한다. 그 밖의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정운전절차는 개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 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화학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자체 방재 인력 현황 2. 방재장비·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보유현황 및 배치도 3. 방재장비·물품 등의 관리·유지 및 확충 계획 4. 방재인력 및 장비·물품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타 사항 ③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와 사고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사내 경보시설의 종류 및 경보발령지점 2. 경보전달체계 및 경보전달 담당자 3. 경보시설 유지관리방법 4. 기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에 필요한 사항 ④ 대표 공정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응급조치계획은 각 호의 취급시설 중 화학사고 유형(독성누출 또는 화재·폭발)을 고려하여 취급시설 유형별로 각각 작성하되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유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저장시설 2. 보관시설 3. 반응·교반시설 4. 입·출하시설 5. 배관시설 6. 캐비닛형 가스공급시설 7. 기타시설	제29조(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4.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호, 2026.4.22., 일부개정]	개정안	개정 사유																																																												
⑤ 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 유형별 응급조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해당 시설의 자동·수동 차단시스템 2. <u>단계별 내·외부 확산차단 또는 방지대책</u> 3. 2차 오염 방지대책(소방용수 수계 유입 방지 대책, 우수로 차단, 폐기물 처리 등을 포함) 4. 사내·외 비상대피, 응급의료 및 환자수송 계획 5. 기타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u>단계별 내·외부 확산차단 또는 방지대책(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을 포함)</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u>화재·폭발 위험 구역(「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비상 상황 대비 응급조치</u> 6. <u>화재 초기 소화 대응방안, 화재 확산 시 유관기관 정보제공 방안</u> 7. (이하 현행과 같음)	금수성 물질 보관 사업장의 화재사고 발생 시 외부 반출계획을 포함함으로써 2차 사고 예방 기 설정된 폭발위험장소에 대한 화학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화관서 상 응급조치계획 수립 사고 발생 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유관기관 정보제공 방안을 추가함으로써 화관서 현장 작동성 강화																																																												
[별지 제13호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1. 취급시설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1) () 사고시나리오 <table><tr><th>연번</th><th>개시사건</th><th>빈도</th><th>개수</th><th>사고빈도</th></tr><tr><td>1</td><td>고압용기파열</td><td>1×10⁻⁶</td><td></td><td></td></tr><tr><td>2</td><td>배관파열</td><td>1×10⁻⁵</td><td></td><td></td></tr><tr><td>3</td><td>배관누출</td><td>1×10⁻³</td><td></td><td></td></tr><tr><td>4</td><td>상압 탱크 파열 및 누출</td><td>1×10⁻³</td><td></td><td></td></tr><tr><td>5</td><td>플랜지 등의 가스켓 파손</td><td>1×10⁻³</td><td></td><td></td></tr><tr><td>6</td><td>펌프/컴프레서 누출</td><td>1×10⁻³</td><td></td><td></td></tr><tr><td>7</td><td>안전밸브 오작동 및 조기개방</td><td>1×10⁻²</td><td></td><td></td></tr><tr><td>8</td><td>냉각수 손실</td><td>1×10⁻¹</td><td></td><td></td></tr><tr><td>9</td><td>입/출하 시설 누출 사고</td><td>1×10⁻²</td><td></td><td></td></tr><tr><td>10</td><td>외부화재</td><td>1×10⁻²</td><td></td><td></td></tr><tr><td>합</td><td></td><td></td><td></td><td></td></tr></table> 2. 안전성 확보설비 여부 3. 보호대상 명세	연번	개시사건	빈도	개수	사고빈도	1	고압용기파열	1×10 ⁻⁶			2	배관파열	1×10 ⁻⁵			3	배관누출	1×10 ⁻³			4	상압 탱크 파열 및 누출	1×10 ⁻³			5	플랜지 등의 가스켓 파손	1×10 ⁻³			6	펌프/컴프레서 누출	1×10 ⁻³			7	안전밸브 오작동 및 조기개방	1×10 ⁻²			8	냉각수 손실	1×10 ⁻¹			9	입/출하 시설 누출 사고	1×10 ⁻²			10	외부화재	1×10 ⁻²			합					[별지 제14호서식]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번호 오기 현행화(기존 13호→14호)
연번	개시사건	빈도	개수	사고빈도																																																										
1	고압용기파열	1×10 ⁻⁶																																																												
2	배관파열	1×10 ⁻⁵																																																												
3	배관누출	1×10 ⁻³																																																												
4	상압 탱크 파열 및 누출	1×10 ⁻³																																																												
5	플랜지 등의 가스켓 파손	1×10 ⁻³																																																												
6	펌프/컴프레서 누출	1×10 ⁻³																																																												
7	안전밸브 오작동 및 조기개방	1×10 ⁻²																																																												
8	냉각수 손실	1×10 ⁻¹																																																												
9	입/출하 시설 누출 사고	1×10 ⁻²																																																												
10	외부화재	1×10 ⁻²																																																												
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4.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7호, 2026.4.22., 일부개정]	개정안	개정 사유																								
<table><tr><td colspan="4">보호대상 포함 여부</td></tr><tr><td>☐ 갑종 보호대상</td><td>☐ 을종 보호대상</td><td>☐ 환경수용체</td><td>☐ 근로자 ☐ 거주민</td></tr></table> <table><tr><th>보호대상 종류</th><th>보호대상 명칭</th><th>장외거리(m)</th><th>주민 수(명)</th></tr><tr><td> </td><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d> </td></tr><tr><td> </td><td> </td><td> </td><td> </td></tr></table> 주) ① 사고시나리오별 시설빈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사고 개시사건의 빈도와 개수의 곱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값을 작성한다. 사고시나리오 구획 내의 개시사건과 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증빙한다. ② 안전성확보설비 여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하는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외 기준을 적용하여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 한정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한다. ③ 보호대상 종류는 별표 4의 갑종, 을종 보호대상 및 환경수용체의 세부 구분 중 선택하여 작성한다. ④ 장외거리는 사업장 경계에서 보호대상까지의 거리를 작성한다. ⑤ 주민 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향범위 내 주민 수에서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작성한다.	보호대상 포함 여부				☐ 갑종 보호대상	☐ 을종 보호대상	☐ 환경수용체	☐ 근로자 ☐ 거주민	보호대상 종류	보호대상 명칭	장외거리(m)	주민 수(명)														
보호대상 포함 여부																										
☐ 갑종 보호대상	☐ 을종 보호대상	☐ 환경수용체	☐ 근로자 ☐ 거주민																							
보호대상 종류	보호대상 명칭	장외거리(m)	주민 수(명)																							